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022. 4. 26.

주식회사 디알비동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22. 4.26.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독립성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 5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3 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 6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소속위원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 7 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등기우편, 전자적 방법,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0 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 (6)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보고
- (7)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여부 결정
- (6)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변경 · 해임
-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9)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10) 감사인의 독립성 평가
- (11) 감사인이 회사와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및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승인 단, 비감사용역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금액이 연간 감사용역의 5%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권한을 위임 받은 감사위원이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사전승인 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2)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 (13)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1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15)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 (16)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7)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18) 내부고발제도의 설치
- (19)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승인
- (2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 (21) 감사위원회의 준법지원인 평가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내부감사조직의 감사활동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 14 조 감사인의 선임

- ① 위원회는 회사가 선임할 감사인을 선정한다.
-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감사인이 외감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16 조 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 17 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요청하려면 전기감사인 및 해임요청하려는 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 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6 조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이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 1 호 및 제 2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제 18 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9 조 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 20 조 감사위원회 지원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회사에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내부감사 규정에 정한다.

- ③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 ① 위원회는 연 1회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 23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2022. 4. 26)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